

# 정 정 신 고 (보 고)

2021년 6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집합투자규약  
삼성퇴직연금글로벌에셋증권자투자신탁H[채권혼합-재간접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06.13

3. 정정 내용 :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에 따른 투자목적 및 투자한도 정정
- 법령 개정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1조 (목적 및 종류 등)	②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식관련 자산(국내외 주식 및 국내외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채권관련 자산(국내외 채권 및 국내외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b>원자재관련 자산(국내외 원자재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원자재관련 파생상품 등)</b> 등에 분산투자 하되, 채권관련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증권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주식관련 자산, 채권관련 자산, <b>원자재관련 자산</b>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관련 자산, 채권관련 자산, <b>원자재관련 자산</b>	②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식관련 자산(국내외 주식 및 국내외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채권관련 자산(국내외 채권 및 국내외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b>(삭제)</b> 등에 분산투자 하되, 채권관련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증권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주식관련 자산, 채권관련 자산 <b>(삭제)</b> 등에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관련 자산, 채권관련 자산 <b>(삭제)</b> 등에 등은 전세계 경제 상황 및 주식, 환율, 금리 등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등은 전세계 경제 상황 및 주식, 환율, 금리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성을 가지고 있다.
제2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모투자신탁)	<p>②이 투자신탁은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삼성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li> <li>2. 삼성글로벌주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li> <li>3. 삼성글로벌커머더티특별자산모투자신탁[원자재-파생재간접형]</li> </ol>	<p>②이 투자신탁은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삼성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li> <li>2. 삼성글로벌주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li> </ol> <p><b>(삭 제)</b></p>
제8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p>제8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p> <p>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1좌당1원을 기준으로 제19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 기준가격’ 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 좌 수는 10조좌로 한다</p>	<p>제8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p> <p>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1좌당1원을 기준으로 제19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 기준가격’ 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b>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 이하 “ 수익증권” 이라 한다)</b>의 총 좌수는 10조좌로 한다</p>
제13조(수익권의 분할)	<p>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b>표시한다.</b></p>	<p>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b>발행한다.</b></p>
제14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p>제14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b>예탁</b>)</p>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b>수익증권의 발행가액</b>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b>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b>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제14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b>전자등록</b>)</p>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b>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b>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b>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b>」 (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p>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p>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li> <li>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li> </ol>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p> <p>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 실질수익자” 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⑤ (생략)</p>	<p>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 전자등록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p> <p>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 수익증권고객계좌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객의 성명 및 주소</li> <li>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li> </ol> <p>(삭 제)</p> <p>③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④ (현행과 동일)</p>
제15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p>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p>	<삭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16조 (수익 증권의 재교 부)	<p>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 현 물보유수익자” 라 한다. 이하 같다 )는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 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 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보 또 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 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 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 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 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 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p> <p>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 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p>	<삭제>
제17조(수익 증권의 양도)	<p>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 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 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 로 추정한다.</p> <p>②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 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 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 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 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 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 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p>
제18조(수익 자명부)	<p>제18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 부)</p> <p>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 하여야 한다.</p> <p>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p>	<p>제18조(수익자명부)</p> <p>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 여야 한다.</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p>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p>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b>한국예탁결제원</b>은 관련 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생략)</p> <p>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b>한국예탁결제원</b>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b>한국예탁결제원</b>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b>실질</b>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실질</b>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통신 주소</li> <li>2. <b>실질</b>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li> </ol> <p>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b>한국예탁결제원</b>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b>실질수익자명부</b>”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b>및 실질수익자</b>의 성명과 수익증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b>실질수익자명부</b>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p> <p>⑧(생략)</p>	<p>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b>전자등록기관</b>은 관련 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생략)</p> <p>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b>전자등록기관</b>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b>전자등록기관</b>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통신 주소</li> <li>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li> </ol> <p>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b>전자등록기관</b>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b>수익자명부</b>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증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삭 제)</p> <p>⑦(생략)</p>
제21조(환매 청구 및 방법 등)	<p>⑤<b>실질수익자</b>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b>한국예탁결제원</b>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p>	<p>(삭 제)</p>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p>국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p> <p>⑥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p>	(삭 제)
제22조 (환매 가격 및 환매 방법)	<p>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은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생략)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생략)</p> <p>⑤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p>	<p>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생략)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현행과 동일)</p> <p>(삭 제)</p>
제24조 (수익 증권의 일부 환매)	<p>②제1항의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한다.</p>	(삭 제)
제29조(수익 자총회의 소 집)	<p>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제34조 (반대 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p>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p>	(삭 제)
제36조 (투자	<p>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p>	<p>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p>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대상 등)	음 각호의 투자대상(추 가)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제37조(투자 한도)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은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조제2항제1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li> <li>2. 제2조제2항제2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이하로 한다.</li> <li>3. 제2조제2항제3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li> <li>4.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li> <li>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에 대한 투자는 합산하여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li> </ol>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은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조제2항제1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li> <li>2. 제2조제2항제2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이하로 한다.</li> </ol> <p>(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li> <li>4.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에 대한 투자는 합산하여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li> </ol>
제39조(자산 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p>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b>한국예탁결제원</b>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p>	<p><b>한도로 하여</b>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b>전자등록기관</b>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p>
제41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	<p>②제1항에서 “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p> <p>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b>예탁</b> 및 결제비용</p> <p>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b>추가</b>)</p>	<p>②제1항에서 “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p> <p>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b>전자등록</b> 및 결제비용</p> <p>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b>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b>)</p>
제42조 (투자신탁의 해지)	<p>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4. (생략)</p> <p>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b>추가</b>)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p>	<p>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4. (생략)</p> <p>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b>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b>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p>
제49조(신탁계약의 변경)	<p>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p> <p>1. (생략)</p> <p>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 에서 정한 사유 제외)</p>	<p>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p> <p>1. (생략)</p> <p>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b>다만, 신탁업자의 중</b></p>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p>3. ~5. (생략)</p> <p>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 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p>	<p>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 180일(이하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40조에 따른 신탁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제40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p> <p>3. ~5. (생략)</p> <p>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 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40조에 따른 운용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문료 등)의 합(이하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제40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p>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p>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p>
<p>제51조(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p>	<p>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0.(생략) (신설)</p> <p>11. (생략)</p>	<p>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0.(생략) 11.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특별자산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로서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 처분하는 경우 제외), 지상권,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또는 변경이 있거나,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가 있는 경우 12. (생략)</p>
<p>제51조(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p>	<p>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p>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p>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신설)</p> <p>⑤ (생략)</p>	<p>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⑥ (생략)</p>
부칙	(신 설)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에 따른 투자목적 및 투자한도 정정, 법령 개정사항 반영)